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병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423

발의연월일: 2024. 7. 31.

발 의 자: 한병도 · 신영대 · 윤준병

안호영 · 이춘석 · 이성윤

박희승 • 이워택 • 정동영

신정훈 · 김윤덕 · 윤건영

박정현 • 양부남 • 김성회

위성곤 • 황정아 의원

(17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24년 1월 현재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는 세종·제주·강원· 전북 4개지역으로 각각 특례를 규정한 개별법이 있음.

그러나, 현행법 제197조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하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 자치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.

이에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를 추가 규정함으로써 현행법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(안 제11장 제목 및 제197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장의 제목 중 "제주특별자치도의"를 "특별자치도의"로 한다.

제197조제2항 중 "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"를 "세종특별자 치시, 제주특별자치도,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의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1장 서울특별시 및 대도시 등			
과 세종특별자치시 및 <u>제주특별</u>	특별		
<u> 자치도의</u> 행정특례	<u> 자치도의</u>		
제197조(특례의 인정) ① (생	제197조(특례의 인정) ① (현행과		
략)	같음)		
②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	② 세종특별자치시, 제주특별자		
<u> 자치도의</u> 지위·조직 및 행정	치도,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		
• 재정 등의 운영에 대해서는	별자치도의		
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			
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			
를 둘 수 있다.			